

『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수민 의원 외 8 명

2. 제안이유

-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와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 교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서,
- 시민들에게 농업 참여의 기회와 공동체 문화공간을 제공하고, 도농복합도시의 특색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도시농업의 기본이념 (안 제2조)
- 용어정의 (안 제3조)
- 시장과 도시농부의 책임 (안 제4조, 안 제5조)
-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 (안 제8조, 안 제9조)
- 시민간의 교류지원 (안 제6조)
-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지원 (안 제12조)
- 위원회 구성 및 기능 (안 제13조, 안 제14조)
- 보조금의 지원 등 (안 제18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

-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」

○ 관련부서 의견

- 선산출장소 농정과 : 달리 의견 없음.
-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본 ‘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안’ 은,

○ 위 법령에 근거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와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 교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,

○ 그 주요내용으로는,

- 도시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실현하여 성숙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.
- 도시농업, 도시농부, 도시텃밭, 상자텃밭 등 용어정의.
-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, 시민간의 교류지원, 도시텃밭의 조성, 상자텃밭의 보급, 일자리 창출, 우수사례 발굴,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,
- 도시농업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여,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이 되고,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,

- 또한,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사항을 명시.

☐ 위와 같이,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 안이 제정되었고, 해당부서의 의견이 없으므로,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